

2016년도 (재)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(안)

의안 번호	15-94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『지방재정법』 제18조제3항 개정

- 『지방재정법』 제18조제3항이 개정(2014. 05. 28.)되어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,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의결 요청 사항 : “2016년도 (재)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(안)”

2. 주요골자

가. 대상 : (재)마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다. 필요성

-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, 마포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, 마포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함

라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출연 가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 후, 세부사항은 2016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 및 편성

마. 추진일정

- 2015. 10월 : 2016년도 (재)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(안) 수립
- 2015. 10월 : 구의회 의결 요청
- 2015. 10월 : 구의회 의결
- 2015. 11월 ~ 12월 : 예산 심의 및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